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09년 1번

(2009년 4월 21일 채택)

모범절차규칙 채택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채택한 모범절차규칙에 따라 중재패널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공동위원회가 이 협정 제8.1조 제4항에 따라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모범절차규칙이라는 제하의 이 결정 부속서에 규정된 문안이 채택된다.
2.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사무처에 기탁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에 언급된
모범 절차 규칙

제 1 조 정 의

1. 이 모범절차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목적상,

가. “조언자”라 함은 중재패널과정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을 조언 혹은 보조하기 위하여 분쟁 당사국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자”라 함은 중재위원이 그 업무 수행을 보조하고자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다. “후보자”라 함은 이 협정의 제9.5조에 따라 중재위원으로서의 임명을 위하여 고려중인 개인을 말한다.

라. “일”이라 함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마. “분쟁 당사국의 대표”라 함은 분쟁 당사국이 임명한 피고용인, 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다음에서, “분쟁 당사국”, “제소 당사국”, “피소 당사국”의 용어들은 분쟁에 들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분쟁에 관련되어 있음에 관계 없이 사용된다.

제 2 조 시간의 계산

1. 제9장과 이 규칙에 명시된 모든 기간은 제9장과 이 규칙이 언급하는 행위 혹은 사실이 있는 다음 날로부터 기산된다. 만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수신국의 공휴일 혹은 비업무일인 경우 그 기간은 다음 업무일 까지 연장된다.

2.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에서 분쟁당사국은 각자의 공식 공휴일 및 비업무일을 서로 통보한다.

제 3 조

후보자 및 중재위원의 선택 기준 및 자기공개 의무

1. 중재위원은 이 협정 제9.5조 제7항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다. 또한 중재위원들은 분쟁 관련 사항에 관한 포괄적인 경력 및 전문적 지식을 가진다.

2. 중재위원은 정부 대표 혹은 어떤 조직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3. 후보자들은 후보자의 독립성이나 공평성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정당한 의심을 일으키는 이해, 관계 혹은 사항에 대하여 분쟁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공개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제3항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고 후보자는 분쟁당사국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항상 공개한다.

가. 다음에서 자신의 재정적 이해 혹은 고용주, 파트너, 사업동료 혹은 가족구성원의 재정적 이해

(1) 중재패널절차 또는 결과 그리고

(2) 현재 중재패널절차에서 고려 대상 사안과 관련된 행정 절차, 국내법정 절차, 다른 중재패널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

나. 절차의 모든 이해 당사자와의 과거 혹은 현재의 재정, 사업, 직업,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조언자와의 관계, 또는 후보자의 고용주, 파트너, 사업 동료 혹은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모든 관계

다. 중재패널절차 분쟁 사안과 관련되거나 같은 상품 혹은 서비스와 관련되는 공공 변호 혹은 법적 혹은 기타 대리

제 4 조 중재위원의 임무

1. 중재위원으로 선택된 직후, 중재위원은 중재패널절차 동안 근면하고 공평하게 그 의무를 철저히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2. 중재위원으로 임명되면 중재위원은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모든 이해·관계 또는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서면으로 분쟁당사국들에게 공개한다. 중재위원이 분쟁당사국들에게 중재패널절차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 및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 의무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3. 중재위원은 중재패널절차 과정에서 언급되고 결정에 필요한 논점에 대해서만 고려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 의무를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중재위원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부적당하거나 편견을 드러내는 모습은 피하며 개인이익, 외부압박, 정치적 고려, 공공소란, 당사국에 대한 충성 혹은 비판우려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중재위원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절한 의무 수행에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 같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혜택을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재위원은 개인적 혹은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은 피한다.

7. 중재위원은 재정, 사업, 직업, 가족 혹은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그 행동 혹은 판정에 영향을 주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중재위원은 그의 중립성에 영향을 주거나 부적당하거나 편견의 양상

을 창출할 수 있는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득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9. 독립성, 공정성 또는 비밀 유지에 대한 실질적 위반의 증거, 또는 분쟁 해결 매커니즘의 일체성, 공정성 또는 비밀유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중재위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충돌 회피에 대한 실질적 위반의 증거를 가지거나 가지게 된 어느 당사국 또는 중재위원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한 증거를 중재패널 및 분쟁당사국에게 관련 사실과 상황을 명시한 서면으로 제출한다.

제 5 조

중재위원 탈퇴 혹은 해임

중재위원이 사망하거나 탈퇴하거나 해임될 경우, 중재패널은 새 중재위원의 임명 및 분쟁당사국과의 협의 후에 심리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반복하여야 할 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업무 절차 혹은 시간표에 대하여 필요한 수정사항을 결정한다.

제 6 조

중재패널의 운영

1. 패널 의장은 모든 중재패널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의장에게 현재 분쟁 절차와 관련된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분쟁당사국이 달리 동의하지 않은 한, 특별히 심리의 구성 등 그 절차를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진다.

2. 이 규칙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화상 회의 또는 이메일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패널위원만이 중재패널 심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 심리 동안에 보조원, 행정 직원, 통역사 또는 번역가의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4. 모든 결정 및 판정의 기안은 중재패널의 전속적인 책임이다.

5.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이 협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제 7 조 중재의 시작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패널절차의 행정 및 시간표, 서면 제출 마감 시한 그리고 이미 합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세계무역기구 기준에 합치하는, 중재위원들에게 지급될 보수 및 비용 등을 포함하여 분쟁당사국 혹은 중재패널이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분쟁당사국은 중재패널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합한다.

제 8 조 서면 입장서

1.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 서면 입장서를 중재패널 설치일 이후 25일 이내에 제출한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반박 서면 입장서를 최초 서면입장서 접수 35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은 분쟁 당사국의 견해 제출을 요청한 후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추가 서면 입장서 제출이 필요한 지 또는 분쟁당사국이 추가 서면 입장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입장서를 전달하는 기간을 정한다.

제 9 조

심 리

1. 의장은 분쟁당사국 및 중재패널의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심리 장소, 날짜 및 시간을 정한다.

2.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추가적인 심리를 소집할 수 있다.

3. 모든 중재위원은 모든 심리에 참석한다.

4. 다음과 같은 사람은 중재패널절차의 공개여부에 관계 없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국의 대표

나. 분쟁당사국의 조언자

다. 중재패널절차 보조 행정 직원, 통역사, 번역가 그리고 법정속기사, 그리고

라. 중재위원의 보조인

5. 늦어도 심리 5일전에 모든 분쟁당사국은 자신을 대변하여 청문회에서 구두로 주장 혹은 변론할 사람과 청문회에 참석할 대표인 혹은 조언자의 명단을 참석할 증인들의 명단과 함께 전달한다.

6. 중재패널절차는 제소당사국 및 피소당사국이 동등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진행된다. 당사국은 주장을 하는 것에 추가하여 반박 주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7. 중재패널은 심리 중 어느 시점에서라도 심리에 참석하고 있는 분쟁당사국 혹은 사람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다.

8. 중재패널은 각 청문회의 의사록이 준비되도록 하고, 준비 직후 분쟁 당사국에게 의사록의 사본을 전달한다.

9. 심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분쟁당사국은 심리 중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한 보충 서면 입장서를 전달할 수 있다.

제 10 조 서면 질문

1. 중재패널은 절차 중 어느 시점에라도 분쟁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각 분쟁당사국은 중재패널이 한 질문의 사본을 받는다.

2. 중재패널이 서면질문을 보내는 분쟁 당사국은 서면 답변 사본을 중재패널 및 다른 분쟁 당사국에게 중재패널이 정한 기한 내에 전달한다. 각 분쟁당사국은 그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 11 조 기밀 유지

1. 분쟁 당사국, 중재위원 및 중재절차에 관련된 개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 동안 공개된 정보 및 당사국에 의하여 비밀로 확인된 정보에 대한 비밀성을 항상 유지한다.

2. 공개 심리, 그리고 분쟁당사국이 비밀정보 공개 위험을 감수할 경우, 그러한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채택되어야 한다.

제 12 조 일방 연락

1. 중재패널은 다른 쪽 분쟁 당사국 없이 어느 한 쪽 분쟁당사국과 만나거나 고려중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서는 아니된다.

2. 어떠한 중재위원도 고려중인 사항에 대하여 다른 중재위원 없이 다른 혹은 모든 당사국과 논의해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 전문가의 역할

분쟁 당사국의 요구 혹은 자발적으로 중재패널은 모든 자연인 혹은 법인 혹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구로부터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은 서면으로 그러한 정보를 통보 받는다. 그렇게 수집된 모든 정보는 논평을 위하여 분쟁당사국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 14 조 통 보

1. 모든 요구, 통보, 서면제출 혹은 기타 문서는 영수증, 등기, 급사, 모사전송, 전신, 전보 혹은 그 수령 기록을 제공하는 기타 수단으로 전달되었을 경우 수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분쟁당사국은 다른 분쟁 당사국 및 각 중재위원에게 자국의 제출서면서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형식으로도 제공된다.

3. 중재패널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구, 통지, 서면제출 혹은 다른 문서의 사무적인 작은 실수는 그 변경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새 문서의 전달로 수정될 수 있다.

제 15 조 언 어

1. 중재패널절차 및 패널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이다.
2. 각 분쟁당사국은 제출서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